

**신구조문대비표**  
「건축법 시행규칙」

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234호, 2015.10.5., 일부개정]	건축법 시행규칙 [국토교통부령 제278호, 2016.1.13., 일부개정]
<p><b>제2조(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)</b> ① 법 제4조제1항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(이하 “중앙건축위원회”라 한다)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2조(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)</b>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. 다만,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.</p> <p>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p>
<p><b>제4조(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)</b>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(이하 “허가권자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</p>	<p><b>제4조(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)</b>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별표 2 중 건축계획서(에너지절약계획서,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) 및 배치도(조경계획은 제외한다)</p>
<p><b>제12조(건축신고)</b>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·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·대수선·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</p>	<p><b>제12조(건축신고)</b> ①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


1. ~ 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